2008년도 市立 博物館 및 圖書館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仁川廣域市
http://www.incheon.go.kr

監査官室(감사1팀)

1. 처분요구서 일람표 (10)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 **전시보조 및 유물보존·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적정** ➪사업량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복무관리 철저	시립박물관	주의		4
2	◦ **리플렛 및 전시도록 제작업무 추진 부적정** ➪회계관련 규정 준수	시립박물관	주의		7
3	◦ **송암미술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지연** ➪지적사항 철저 이행	시립박물관	시정 (개선)		9
4	◦ **교동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수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청구하고 인건비는 세입조치	시립박물관	주의		13
5	◦ **외부기관 및 개인 소장유물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시립박물관	개선		16
6	◦ **박물관 및 미술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불필요한 예산 감액 및 삭감 처리	시립박물관	시정		18
7	◦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적절**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재 ➪수납인영 미날인시 배상금 징수	시립박물관	주의		21
8	◦ **뮤지엄 샵 부가가치세 처리 부적정** ➪부가가치세 372,000원 징수·납부	시립박물관	시정		24
9	◦ **이민사박물관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시립박물관 소속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시립박물관	권고		26
10	◦ **시립박물관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중·단기 계획에 의건 유물구입 ➪1차 유물구입 심사시 평가소견 기술 및 2차 평가 외부인력 Pool 구성	시립박물관	개선		29

2. 시립도서관 처분요구서 일람표 (4)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 **계약업무 부적정** ⇨계약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립도서관	주의		33
2	◦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서 보유계획 및 수서기준 마련·시행	시립도서관	주의		35
3	◦ **자치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조례 및 열람규칙 개정	시립도서관	개선		38
4	◦ **고서 해제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 ⇨이용의 접근성 제고 등 활용방안 강구	시립도서관	주의		40

[별첨 1]

- 시립박물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전시보조 및 유물보존·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회계년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을 설정하여야 하고, 소속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파견,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상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해당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사부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준용하며, 다만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전시보조 및 유물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운영하면서 상설전시 보조의 경우 전시사업 목적과 타당한지의 여부, 유물보존 및 처리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기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유물보존처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일정 및 사업량을 반영하여 월·분기·년별 사용계획서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통상의 관행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 등을 지정함에 있어 부서장 결재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결재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지 등에 대한 결재조차 하지 않는 등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속기간이 1년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래영 등 2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치 않고 운영한바 있으며,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교육에 소홀히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5일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운영하여야 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수당 및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치 않고 운영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량 및 사업추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은 물론 복무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상설안내용 리플렛 및 전시도록 제작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고,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23조의 규정에는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2007. 5. 15 “2007. 상설전시 안내용 리플렛”을 제작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의 서식에 의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계약금액 등을 명백히 하여 각각의 상대자가 날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지출하였으며, 계약이행시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를 소화(20,000원)하여야 함에도 미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완료후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함에도 검수조서를 생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 11. 26 “특별전 리플렛 및 도록” 제작을 위하여 리플렛 3,000부, 도록 900부 집행예산 19,470천 원을 집행 품의하여 인천광역시 ○○ ○○○ 0가00-00 ○○○○ ○○○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록의 경우 집행품의한 수량과 달리 800부를 제작 납품토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발주부서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집행품의 수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검수조서를 작성·확인치 않고 납품받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송암미술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지연

[위법부당내용]

1. 기증유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음에도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자료의 고증, 감정 또는 기증·기탁 유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술관자료평가심의위원회를 소집하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년 송암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규칙을 제정토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소장유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였음에도 홈페이지 제작 지연

2007년 송암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소장유물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2008년 9월 현재까지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바, 비록 시에서 각 사업소별 홈페이지를 통합·링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역사박물관이나 부산광역시박물관의 경우처럼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이민사박물관 등 각종 시립박물관은 물론,

강화역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등 군·구립 박물관과 가천박물관, 인하대학교 박물관 등 사립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 구축함이 요구됩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해당 군·구 및 가천길재단, 인하대학교 등과 사전에 협의요망)**

3. 유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유물관리 부실

2007년 종합감사 결과 유물자료의 등록, 전산화, 실측 및 사진촬영 등 유물관리 시스템 구축작업의 지연으로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히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하였음에도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금번 감사 기간 중에 현지 확인한 결과 신축 별관으로 유물을 이전코자 대부분의 유물을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시공사 측의 보일러 철거작업 부실로 미술관 내에 먼지와 연기가 자욱하고, 또한 미술관 맞은편에는 동양화학 유수지 매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리모델링 공사나 유물의 이전, 보관 등이 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옥외 전시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지연

또한 송암미술관 옥외 조경시설 부지에는 전시유물(석조물 56점), 입목 38종 955본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망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CCTV 등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이를 속히 구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 지연을 이유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미술관 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정리 지연

아울러 2007년 종합감사 결과 남구 학익동 587-145번지 소재 미술관 건물(2,518.4㎡)과 그 부속토지인 학익동 587-145, 587-180, 587-181, 587-237 등 4개 필지 합계 14,553㎡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토록 요구하였음에도,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 학익동 587-145번지만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그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을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시립박물관장은 기증유물 평가를 위한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시행하시기 바라며,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되, 서울역사박물관이나 부산시립박물관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이민사박물관 등 시립(군·구 포함) 박물관은 물론, 인하대학교 박물관 등 사립박물관과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속히 완료하시고, 박물관 주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유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옥외 전시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미술관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를 속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2007년 송암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 지속되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교동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수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 청구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타 수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계상치 아니함

문화재보호법 제74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규정에 따르면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립박물관은 같은 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위 법령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사로부터 지표조사 등의 관련사업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25조의2(공사의 대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르면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인건비는 “계약목적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하고, 각 등급별 조사요원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립박물관에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지구 경지정리사업구역내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공사 ○○지사”로부터 수탁 받아(계약금액 469,073천원) 추진하면서 농촌공사에서“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토록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 기간제 연구원 및 현장 근무자들의 인건비와 여비만 계상, 청구함),**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수료나 이윤을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음에도,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는 대신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10%(42,630천원)을 수수료로 계상, 청구하여 세입 조치하는 등 발굴조사 수탁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동 건과 관련하여 2004년 시립박물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 ○0○○ 도로공사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 ○○○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등의 수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계상 청구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토록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시립박물관장은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추진하는 경우 관계법령(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서 정한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청구하고 인건비는 세입·조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건은 2004년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위탁기관인 ○○○○공사 ○○지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비의 10%(* 실지로 인건비 계상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을 청구받아 세입조치 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외부기관 및 개인 소장유물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외부기관 및 개인소장 유물 등에 대한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대상 유물,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한 관련 근거규정도 없이 전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적정하게 보존처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소장자료에 대하여는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립박물관에서는 기증 또는 기탁 받은 유물에 대하여 수송비용을 제외한 전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바,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존처리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도입코자 추진중에 있고, 향후 시립박물관이 우리 시의 보존처리 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고자 준비중에 있는 점을 감안,

외부기관이나 개인소장 유물 등에 대하여는 대상유물, 보존처리 비용부담 주체, 보존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특히 개인 소장유물의 경우 보존처리만 맡긴 후 다시 찾아가는 등의 편법 행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속히 마련함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시립박물관장은 향후 외부기관 및 개인 소장유물 보존처리와 관련 대상유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보존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시되, 특히 개인 소장유물의 경우 보존처리를 맡긴 후 단기간 내에 유물을 다시 찾아가는 등의 편법 행위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박물관 및 미술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본예산	1회 추경	증·감 내역	비 고
송암미술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140,000	121,200	△18,800	
검단선사박물관 개관 기념식	5,000	15,000	+10,000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방호 및 안내용역	43,200	37,460	△5,740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장 경비용역	0	68,000	+68,000	

[위법부당내용]

1. 송암미술관의 경우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을 12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청소용역의 의미가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

지방재정법 및 예산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고, 현실 여건과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송암미술관의 경우 위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121,200천원의 예산으로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을 발주·추진 중에 있는바, 동 시설은 2007년부터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여온 사실이 있습니다.

*** 야외 조경 관리, 청사경비 등 필수 인원 외 청사 청소인부 등 불필요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설계변경하고 업체와 변경계약 체결후 용역추진 요망**

2. 검단 선사박물관의 경우 당초 금년 8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금년 내 개관이 불확실함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함

검단선사박물관의 경우 2006.12.14부터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3,896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립중에 있는데, 당초 2008년 8월 준공을 하고 10월경 개관을 할 예정이었으나, 발굴유물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및 문화재 지정,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하여 금년 중 개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1회 추경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시립박물관에서는(* 검단선사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본관에서 예산을 편성·용역발주를 하고 있음)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관 기념식 행사예산을 당초 5,000천원으로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10,000천원을 증액, 도합 1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전시실은 선사시대 모형물과 발굴현장 모형외 별다른 유물이 없는 상태이나 전시실 방호 및 경비용역의 경우(* 당초 43,200천원에서 37,460천원으로 5,740천원 감액) 당초 설계에 안내원 2, 청소인부 2인으로 설계하였으나 발주이후 현재까지 안내요원 1명, 청소요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단선사박물관 옆에 위치한 야외전시장(발굴당시 현장에 있던 석관묘 등의 유물) 경비용역비를 1회 추경시에 68,000천원을 편성하여 금년 7월 이후부터 경비원 4인(주, 야 각 2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현장 여건이나 향후 소요예측 등을 감안, 전시실방호 및 경비용역은 수주 업체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야외전시장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향후 CCTV 설치로 대체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이 요구됩니다.

*** 개관식 관련예산은 향후 일정을 감안, 2회 추경시 삭감여부 결정**

[처 분 요 구]

1. 시립박물관장은 송암미술관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과 관련 불필요한 예산은 용역 수행업체와 협의, 설계변경 및 감액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검단 선사박물관 전시실 방호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용역 수주업체와 협의, 불필요한 인건비를 설계변경 및 감액하는 한편, 개관식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적절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성 명	부과일	수납일	수납액	비 고
고지서 기재사항	○○은행 인천시청지점	2007.1.4	2007.1.4	16,058	기타잡수입
고지서 기재사항	○○은행	2007.4.9	2007.4.9	66,122	기타잡수입
고지서 기재사항	○○은행	2007.5.3	2007.5.4	5,890	기타이자수입
은행수납인 날인확인 소홀	○○○ 종합건설	2008.4.1	2008.4.16	14,090	송암미술관 전기요금
은행수납인 날인확인 소홀	○○○ 종합건설	2008.5.7	2008.5.22	23,040	송암미술관 전기요금
은행수납인 날인확인 소홀	○○○ 종합건설	2008.7.2	2008.7.2	31,990	송암미술관 전기요금

[위법부당내용]

1. 기타잡수입 등 납입고지서 기재사항 부적절

국고금관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국고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경우 ○○은행 외 1명 3건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등을 징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 등으로 기재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세외수입 납입영수증 은행수납인 날인 확인 소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지방세, 세외수입 및 각 특별회계 수입금(이하“세입금”이라 한다)의 수납대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갑”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금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을”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병”이라 한다)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수납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서 제7조 제4항에서 “병” 은 제1항 및 제2항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시 OCR고지서(수기분고지서 포함) 수납대행업무 착오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수납인 및 취급자인을 누락했을 경우 각 1건당 5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종합건설과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전기요금을 ○○은행에 5건 납부하였으나, 이중 3건이 납부영수증에 ○○은행 수납인영이 날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약정서 제7조 제4항제3호에 의거 1,500원의 배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기타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할 때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수납인영이 날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372,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뮤지엄 샵 부가가치세 처리 부적정

○ 현 황

(:)

성 명	시설명	사용료 징수액	부가가치세 징 수 액	비 고
○ ○ ○	시립박물관 내 뮤지엄 샵	3,720,000	0	

[위법부당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2007.1.1 시행)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었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부동산 임대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시 본청 회계과에서는 2006.12.29(회계과-16335)「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통보하면서 2007.1.1부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및 기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시달하였음에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경우 2007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1월 11일(3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박물관 내 뮤지엄 샵 운영권에 대하여 ○○○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료 3,720,000원을 2007년 11월 12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

372,000원은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박물관 내 뮤지엄 샵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372,000원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이민사박물관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 이민사박물관 개요

- 위 치 :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02-2번지 일원 (서부공원사업소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4,127.41㎡
- 사업비 : 11,579백만원(국비 2,470 시비 9.109)
- 주요시설 : 전시실(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기획전시홀), 영상실, 자료실, 수장고
- 추진일정
  · 2003. 5. 4 : 이민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04. 5. :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 2005. 1. : 실시설계 착수
  · 2005.10.24 : 설계완료
  · 2006. 6.19 : 건축공사 착공
  · 2008. 2.29 : 건립공사 준공
  · 2008. 6. : 박물관 개관식 개최

※ 박물관팀 인원 : 4명 (학예연구사 1, 행정7급 1, 기능9급 1명, 방호9급 1)

[위법부당내용]

○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을 열었던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이를 기념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이민사박물관을 설립하였고, 박물관의 운영은 서부공원사업소와 연접하여 있고 그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등을 사유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8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 운영과장의 소관 업무로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1]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민사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소의 1개 팀(4명)으로는 법

1)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에서 정한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민사박물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시립박물관에서는 관계법령 내용과 취지 등으로 보아 이민사박물관을 소속 기관으로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민사박물관을 비전문기관인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이민사박물관의 운영을 시립박물관 소속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립박물관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 시립박물관 유물현황

- 소장 및 발굴유물 : 20,932점 (본관 8,099 / 송암 9,385 / 검단 3,448)
- 시 지정문화재 : 8점 (유형 5 / 기념물 1 / 문화재자료 2)

○ 2007년도 유물구입 내역 : 57건 189점

[위법부당내용]

1. 유물구입계획 미수립

「박물관 및 미술관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제11조에서 박물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립을 위하여 유물구입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유중인 유물대비 부족유물 또는 학술적 조사·연구 등의 목적에 부합되게 중기 또는 단기의 유물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유물을 구입하여 시립박물관이 지향하는 본래에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편성된 예산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유물을 구입하고 있어 중·단기적인 유물구입계획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2007년도 유물구입의 경우 당초 서화류의 유물부족으로 서화실의 전시를 보강할 수 있는 유물로 구입하고자 했으나 경매 참여에서 낙찰받지 못한 이후 서화류가 아닌 자기·도서·향토유물 위주로 구입

2. 유물구입 심사평가 소홀

시립박물관에서는 유물구입시 유물구입의 적정성, 진위여부, 구입가격결정을 위하여 1·2차에 걸쳐 유물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1차 유물심사위원는 내부직원으로 구성하여 유물매입 공고 후 매도의사를 밝힌 유물에 대하여 구입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1차적인 유물구입의 여부가 위 위원에서 결정되는 바, 객관적인 심사가 요구됨에도 심사내역을 보면 서류심사통과여부를 가부로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평가소견을 기술하여 평가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소견을 기술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참여가 내부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견이 편중될 우려가 있는 바 향토자료(유물) 등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원로 등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차 유물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1차평가로 매입대상으로 정해진 유물에 대하여 실물확인을 통한 진위여부 및 가격결정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재의 위원선정은 평가시에 임의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운영 및 평가책임이 미약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 분야별로 인력POOL을 구성하여 순환제 또는 추첨제로 심사위원을 선발,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1. 시립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중·단기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기초한 유물구입으로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1차 유물심사시에 유물구입의 가부가 결정되니 만큼 평가

소견 개진 등 평가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하시고, 2차 평가 등 외부인력 활용시에는 인력 POOL 구성후 평가참여방식을 결정·운영하시어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 시립도서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계약업무 부적정

○ 계약 준공(납품)일 도과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기한	준공(납품)일	지체일수	비고
1	고서 및 한서 보수용품 구입	10,300	07.01.02	07.01.12	07.01.23	11일	
2	도서관 컴퓨터 구입(삼보)	7,450	07.01.09	07.01.29	07.02.01	3일	
3	도서관 컴퓨터 구입(델)	14,487	07.01.18	07.01.29	07.01.30	1일	
4	전자책(e-Book) 구입	7,082	07.06.27	07.07.11	07.07.14	3일	
5	고서 해제 집필 원고료	26,437	07.08.01	07.11.30	07.12.13	13일	
6	고서 탈산용 약품 구입	9,988	07.12.26	08.01.20	08.01.22	2일	
7	고서 해제집 발간	9,900	07.12.28	08.02.05	08.02.25	20일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에서는 '고서 및 한서 보수용품 구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공(납품)일이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20일까지 도과되었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구입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9.1 현재)	
	권수	금액	권수	금액	권수	금액
총 예 산		59,700,000		53,000,000		73,000,000
총 집 행 액		59,689,560		52,997,500		26,652,660
소 계	3,546	35,318,000	3,733	32,997,500	1,707	18,255,390
정기 도서구입	3,035	26,324,670	2,686	21,165,310	990	8,517,190
희 망 도 서	421	4,349,430	935	9,962,940	644	7,425,400
개별 도서구입	90	4,643,900	112	1,869,250	73	2,312,800
소 계		24,371,560		20,000,000		8,397,270
DVD	488종 696점	10,622,560	293종 373점	5,558,000	116종 122점	2,697,270
E-Book	105종	6,149,000	163종	7,282,000		
웹-컨텐츠	22종	7,600,000	4종	7,160,000	2종	5,700,000

[위법부당내용]

○ 시립도서관은 인천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자체적으로는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천 지역내 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원·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도서관 발전계획 등 미수립

「도서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물론 도서관법에서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도서구입 기준 등 부적정

시립도서관에서는 개별도서·희망도서·정기도서·비도서 등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5천만원에서 7천여만의 도서구입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때 그때의 예산에 맞춰 도서 등 구입계획 수립한 후 자체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장서를 구입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서 보유계획 및 수서기준 등을 마련·시행치 않고 있으며,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서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확보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3. 도서구입 시방서 부적정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유관기관의 추천과 작품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은 도서를 대상으로 수서과정 및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도서를 선정하고, 더욱이 내역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구입함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도서 구입 시방서 상에 납품조건으로 '전체 계약수량의 95%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사전에 100% 구입치 못함을 전제하여 필요 도서를 전량 구입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서 보유계획 및 수서기준 등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3. 입찰을 통하여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전량 납품을 조건으로 하고, 유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립도서관 자치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10.4일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되고 그 내용 또한 전부개정 되면서 시·도에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고, 각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되, 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의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원회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기존 법령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 폐지되면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에서는 2006.10.4일에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었다면 신속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위 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동 위원회 운영을 근거 없이 미약하게 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표도서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및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열람규칙」도 시립도서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도 열람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입법체계에 적절치 못하다 할 것이며, 특히 현재의 조례 및 규칙은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앞으로 개관될 영종 및 수봉도서관 등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례개정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시립도서관에서는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운영 등 소관 사무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열람규칙」또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고서 해제에 관한 사항

○ 고서해제 내역

- : 235 1,199 ( )
- : 31,402 (21,502 / 9,900)

[위법부당내용]

1. 고서해제 사업선정에 소홀

시립도서관에서는 인천지역 공공기관 중 시립도서관이 소장한 유일한 고서를 체제, 내용, 가치 등을 한글로 소개하여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컨텐츠를 확충하고자 고서해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면 동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거쳐 사업의 실효를 확보한 후 그 사업범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소수인력(○○○연구소 ○○○-도서관운영위원장, ○○○○대학 ○○○)과의 고서활용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동 사안을 논의하여 사업수행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제자 추천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 간담회에 참여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에 의뢰하여 받기로 하는 등 고해해제 사업선정 및 수행과정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7.5.18일 씨티은행빌딩에서 ○○대학교 ○○○연구원 주최 ○○○ 세미나에서 “인천시립도서관 소장자료의 문헌적 가치와 활용”의 주재로 2명이 발표함

2. 고서해제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고서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은 시립도서관에서 보관중인 고서에 대한 해제를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일시적 번역 또는 집필한다기 보다는 사업목적 및 성과를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집행 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해제작업 수행자를 임의 위촉하여 고서해제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고서해제집 발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에서는 고서해제집을 발간하였다면 학술적 가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만을 제작하여 배부·보관하고 동 자료를 e-book 제작 또는 인터넷 자료공개를 통해 자료 수요자 및 일반인들의 열람(접근)이 용이하게 끔 하여 사업결과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서로만 500권을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이를 인터넷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자료의 접근 및 활용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주요사업을 결정 시행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결정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사업수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 완료된 고서해제 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공개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